투자관리규정

제정 2007.10.11 개정 2013.07.30 개정 2014.09.30 전부개정 2019.10.22 개정 2020.09.04 개정 2021.06.28 개정 2022.08.12 개정 2024.01.0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현금 및 물품으로 투자하는 투자(이하 '출자'를 포함한다)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1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내·외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기획, 평가 및 사업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단,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은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투자사업"이라 함은 자본을 투하(投下)하여 투하자본보다 더 큰 미래현금을 기대하는 사업 또는 시행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금 및 물품 등의 투자를 통하여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 단순히 사택 등의 취득에 따른 투자는 제외한다.
- 2. "투자총괄부서" 란 투자계획, 심의, 사후관리 등 투자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투자관리를 주 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3. "투자시행부서" 란 투자사업을 탐색하고 투자전략·계획수립, 시행과 진행현황 및 향후 전망분석·보고를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투자지원부서" 란 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인력, 시설, 행정, 금융 등을 지원하는 부서를 맑한다.
- 5. "출자회사"라 공사가 자본을 투자한 별도 법인을 말한다.
- 6. (삭 제) <개정 2022.08.12>
- 7. "사업변경"이라 함은 최종 투자의사결정을 얻어 진행 중인 사업의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8. "사업조정"이란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비조정, 지 분 조정, 매각, 일시 중단, 철수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9. "타당성 조사" 란 투자사업의 투자의사결정을 위해 경제적, 기술적, 리스크 측면에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사업탐색 및 설계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최종 투자의사결정을 검토하는 본 타당성 조사로 구분되다.

제4조(투자사업의 종류) 투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 1. 공사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 2. 정부 정책에 부합되거나 중장기 전략계획 또는 모회사 추진사업과 연계된 사업
- 3. 기타 공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업무분담) ① 투자총괄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8.12>

- 1. 전사적인 투자방향 설정, 성과분석 및 투자사업간 우선순위 조정의 주관
- 2. 사업타당성 분석의 평가 조정
- 3. 투자사업의 종합적인 평가 조정
- 4. 타당성 조사항목에 따른 사업단계별 투자리스크 검토
- 5. 최종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투자사업에 대한 리스크관리 방안 검토
- 6. 사업 변경(사업 조정 포함)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검토
- ② 투자시행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투자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 2 사업타당성부석
 - 3. 주무부처 협의 및 이사회 부의 요청
 - 4. 투자사업의 사후 성과 분석
 - 5.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 ③ 투자지원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 2. 사업수행에 따른 자금 조달업무
- ④ (삭 제) <개정 2022.08.12>

제6조(투자추진절차) ①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절차는 투자사업의 탐색, 주무부처 협의, 예비사업 선정, 타당성 조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포함), 투자 심의, 투자의사결정, 사후관리의 순서로 추진한다. <개정 2021.06.28>

② 입찰 또는 공모 등 외부기관의 별도 선정에 의한 투자사업은 사업예비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친후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안서 등을 제출하고, 낙찰 후(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포함) 본 타당성 조사,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투자의사 결정, 사후관리의 순서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06.28. 개정 2022.08.12>

③ 투자금액 5억원 미만의 투자의 경우 사업예비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본타당성조사,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투자총괄부서장 또는 투자시행부서장이 투자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06.28. 개정 2022.08.12>

- ④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관련 법률 및 운용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06.28.>
- 제7조(투자사업의 탐색) 투자시행부서는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 적합성에 부합하는 투자사업을 탐색하여야 한다.

제 2 장 사업예비선정위원회

- 제8조(설치) 투자사업의 발굴 및 탐색과정에서 기관의 투자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략적 부합성, 경제적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업예비선정위원회를 둔다.
- 제9조(대상사업) 규정 제4조에 따른 사업 중 탐색단계의 국내·외 모든 투자사업을 심의대상으로 하다.
-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사업예비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투자총괄부서장, 간사는 투자총괄부서 담당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예산, 사업전략, 자금 관련 담당부장과 위원장이 선정한 필요분야 담당부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성격에 따라 심의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1.06.28>
- ③ 투자시행부서장은 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개최회망일 10일 전까지 투자총괄부서장에게 개최를 요청하고 별표1 사업예비선정위원회 부의양식, 관련 조사자료(예비 타당성 조사자료 등),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검토할 수 있게 한다.
- ④ 투자시행부서장은 안건 내용 등을 심의위원에게 보고하며, 심의위원은 각 분야별 이슈 등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 한다.
- ⑤ 투자총괄부서장 및 위원들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자시행부서장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투자총괄부서장은 투자시행부서장 및 심의위원에게 사업예비선정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개최일 7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심의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 ⑦ 투자사업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추가할 수 있으며 참여한 외부 심의위원에게 소정의 심의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⑧ 투자시행부서장은 심의 의결된 사업의 타당성 조사 자문용역 등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배정을 투자지원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2(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선정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08.12>

- 1.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자
-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신설 2022.08.12>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08.12>
- ④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2,08,12>
- 제10조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08.12>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제10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24.01.09>
- ② 안건에 대한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원안의 결, 수정의결, 재부의, 또는 부결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01.09>
- 제12조(결과) 심의안건은 별표2의 사업예비선정위원회 의결서를 통해 확정하고, 투자총괄부서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별표3의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심의위원 및 투자시행부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3 장 타당성 조사

-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투자시행부서장은 예비투자사업 선정 이전에 추진하고자 하는 투자사업 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배정 요청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투자사업의 성격상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14조(본타당성조사)** ① 투자시행부서장은 예비투자사업으로 선정된 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투자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투자시행부서장은 본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12>

- ③ 투자시행부서장은 본타당성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 전문 가를 선정하여 타당성 조사결과를 검토함 수 있다.
- ④ 예비타당성 조사와 본타당성 조사는 별표4의 조사 검토 항목에 따라 사업 개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기술성 평가, 법률적 검토 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사업의 성격상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항목 등에 대하여는 조정, 생략할 수 있다.
- ⑤ 투자시행부서장은 사업 변경과 사업 조정 등의 경우에도 기술성, 경제성, 리스크 검토 등 변경부분에 대해 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의뢰하여 심의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08.12>
- 제15조(복수의 타당성 조사) 투자시행부서장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2회 이상의 외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기관 포함)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16조(보고) ① 투자시행부서장은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투자시행부서장은 투자사업 계획서의 내용이 제1항의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와 다른 경우 그 사유를 각 위원회, 이사회, 주무부처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투자사업심의위원회

- 제17조(투자심의기구 설치) ① 투자사업의 객관적 평가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8.12>
- ② 여러 투자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투자여력, 전략적 적합성, 수익성 및 사업위험·포트폴리오, 사업간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사업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제18조(대상)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투자사업(신·구사업 모두 포함)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 1. 사업예비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사업(단, 제6조 제3항에 의한 투자심의 생략 투자 사업은 제외) <개정 2021.06.28>
- 2. 최종 투자의사결정을 얻어 진행 중인 투자사업의 변경, 조정이 필요한 사업
- 3. 그 밖에 투자총괄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9조(구성) ① 위원장은 투자총괄부서 본부장, 간사는 투자총괄부서 담당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하며, 투자총괄본부장 유고시 위원장은 투자총괄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08.12>

- ② 위원은 위원장이 선정하며, 내부위원은 기획·전략·예산·재무 분야 부서장 중 1인을 포함한 관련 부서장 3인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분야별 후보자 명부에서 4인을 선정한다. 단, 감독기관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06.28.. 개정 2022.08.12>
- ③ 투자총괄부서장은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외부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운영한다.
- ④ (삭 제) <개정 2022.08.12>
- ⑤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다. <신설 2021.05.28.>
- 제20조(외부위원 후보자 구성) ① 투자총괄부서장은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분야별 외부위원 후보자 명부를 구성한다. <개정 2021.06.28, 2022.08.12>
- 1. 국립 및 사립대학에 조교수 이상의 직분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 2. 국책 및 민간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분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 3. 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4.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위원 또는 연구원의 직분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5.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6. 리스크관리규정 제29조(구성 및 운영)의 외부위원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신설 2022.08.12>
-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선정하되 심의안건에 따라 분야별 심의위원 등을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21조(운영) ① 투자시행부서장은 개최희망일 14일 전까지 투자총괄부서장에게 개최를 요청하고, 부의안건, 사업계획서, 타당성 조사 결과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개정 2022.08.12>
- ② 투자총괄부서장은 개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하며 사전 검토를 위해 투자시행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심의위원회 개최 7일전에 심의 위원에게 제공하다.
- ③ 투자총괄부서장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자시행부서장에게 보완 및 수 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투자시행부서장은 안건내용 등을 심의위원에게 보고하며, 각 분야별 심의위원은 이슈 등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한다. <개정 2022.08.12>
- ⑤ 투자총괄부서장은 참여한 외부 심의위원에게 소정의 심의수수료를 지급하며, 그 기준은 별도 로 정한다.
- ⑥ (삭 제) <개정 2021.06.28>
- ⑦ 투자총괄부서장은 위원의 회의 참석에 앞서, 별표7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표8의 보안

및 첫렴서약서를 받아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다 <신설 2021 6 28 >

제22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24.01.09>

② 안건에 대한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원안의결, 수정의결, 재부의, 또는 부결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01.09>

제22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회의일시, 회의내용, 의결사항 등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확인서명을 받아 보관하다. <신설 2021.06.28, 개정 2022.08.12>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06.28.>

제23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선정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06.28. 개정 2022.08.12>

-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등을 한 경우
-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자
-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개정 2022.08.12>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8>
- ④ (삭 제) <개정 2021.06.28>
- ⑤ (삭 제) <개정 2022.08.12>
- ⑥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2.08.12>

제23조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함 수 있다. <신설 2022.08.12>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4조(투자결정) ① 투자시행부서장은 국내·외 투자사업(단, 제6조 제3항에 의한 투자심의 생략투자사업 제외)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이사회 의결을 받아 사업참여를 확정하여야 한다. 단,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투자시행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포함된 계획서를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2020.09.04. 개정2021.06.28. 개정2022.08.12>

- 1. 출자의 목적, 필요성
- 2. 출자대상 회사의 사업범위 및 내용
- 3. 출자의 금액 및 시기
- 4. 출자대상 회사의 최소 5년간의 연도별 재무 계획
- 5.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대상 회사에 대한 예산지원, 채무보증, 손실보전 등의 내용
- 6.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투자사업계획에는 사업구조, 경제성 평가, 리스크 관리계획, 재무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세 부항목은 별표6에 따른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항목에 대하여는 생략 사유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투자시행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운영을 위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포괄하는 투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조직, 인력 예산 등 필요한 분야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08.12>

④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정된 투자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제2항, 제3항을 적용한다.

- 1. 지분 및 사업추진 구조 또는 수익모델의 변경
- 2. 공사 투자비 한도의 변경
- 3. 자금조달 방안, 공사 보증내역, 대여금 상환시기 등의 재무계획 변경

제25조(심의기준) 투자사업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2. 공사 주요시책 및 중장기 경영전략과의 부합성
- 3. 투자사업의 규모 및 투자위험
- 4. 경제성 및 효과성
-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제 5 장 사후관리

- 제26조(사후관리) ① 투자시행부서장은 매 반기별 각 투자사업의 계획대비 실적과 향후 전망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별표12에 따른 실적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투자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09>
- ② 투자시행부서장이 사업시행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사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08.12>
- ③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27조(사업평가) ① 투자총괄부서장은 수익성 및 전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투자사업별 평 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출자회사의 사업평가는 출자회사관리규정의 경영진단 절차를 따른다. <개 정 2020.09.04.>
- ② 투자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조정대상 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사유 발생 시에는 정기 사업평가와는 별도로 조정대상 사업을 선정 할 수 있다. 조정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이를 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09.04.>
- 제28조(사업조정) ① 투자총괄부서장은 제27조에 의거 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 대상 사업을 해당 투자시행부서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0.09.04.>
- ② 투자시행부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후 별표8에 따른 사업현황 상세 진단표를 작성하고, 각 사안별로 사업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그 결과를 1년 이내에 투자총괄부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③ 투자시행부서장은 조정방안이 마련되면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하며, 1년 이내에 조정방안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재조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04, 개정 2022.08.12>
- ④ 투자시행부서장은 사업 조정의 진행상황을 반기마다 투자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정방안 시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결과를 투자사업심의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방안 시행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되었고 원안과 차이가 없을 경우 투자총괄부서에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 ⑤ 사업 조정은 사업현황, 조정방안, 경제적 효과 분석, 리스크 분석, 법률, 세무 검토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표9의 사업조정 세부항목에 따른다.
- ⑥ 투자시행부서장은 투자사업의 철수, 양도(매각), 사업기간 만료 등으로 사업의 취소 또는 중단, 종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경과, 취소 또는 중단, 종결 사유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투자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며, 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10, 별표11에 따라 사업종료보고서를 작성하고, 투자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09>
- ⑦ 투자총괄부서장은 사업종료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 (삭 제) <개정 2022.08.12>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사업예비선정위원회 부의양식

(사 업 명)

사업예비선정위원회 안건

제		안		자				
제	안	년	월	일	년	월	일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추진경과,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환경
- 투자비, 주요 조건

2. 전략목표 및 달성방안

- 중장기경영전략과 연계하여 해당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전략목표
- 해당 사업의 사업구조 및 수익모델 추진 과정에서 전략목표 달성 방안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및 시너지 효과

3. 사업구조

○ 지분구조, 조세구조, 법제도 등을 고려한 투자방식(직접투자, 자회사 설립, 출자, SPC 등), 최적 투자구조 및 사유, 수익모델

4. 경제성

○ 연도별 손익계산서, NPV, IRR, PP

5. 민감도 분석

○ 할인율 총투자비(CAPEX, OPEX) 등의 변동에 따른 NPV, IRR 등 민감도 분석

6. 리스크

○ 정치리스크, 경제리스크, 사회리스크, 기술리스크, 법률리스크, 국가 리스크, 운영사리스크 등 분석 및 관리계획

7. 기대효과

8. 추진계획

○ 타당성 조사 추진방안, 연도별, 사업단계별 세부 추진내용 등

※ 사업의 특성 및 진행정도에 따라 투자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항목 조정가능

사업예비선정위원회 의결서

일 시	20 (: -	장 소			
위 원 장		출석/결석위원		명/	명
제 안 자		간 사			

사업예비선정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으로 심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회의결과					
				원안의결, 수정의결 재부의, 부결		
직위	성명	서명	안건 동의	채택 반대	의견	
	직위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안건}	원안의결, 재부의 직위 성명 서명 ^{안건채택}	

【별표3】

사업예비선정위원회 회의결과

1	아거며	•
Ι.	114176	

0	Q] 2]	111	장소	
7, .	일시	17	25.40	

3. 참석자

- 위 원 장 :
- 심의위원 :
- 사업부서 :

4. 심의내용

분 야	내 용

5. 의결내용

사업예비선정위원회 위원장 ○○○ (인)

타당성 조사 검토 항목

평가분야	평가 지표	비고
	▪ 사업추진 주체	
	• 사업목적	
	• 사업의 기대효과	
I.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소유구조 및 운영구조	
	- Ownership 및 Operationship Structure	
	• 사업관련 계약서 형태 및 주요내용	
	• 총사업비(총매출액 등)	
	• 자본구조 및 조달 파악 등	
	-Debt/Equity 구조, PF 여부	
	• 총편익 및 제세공과금 등	D/C> 1
	• 비용편익분석(B/C 비율)	B/C≥1
Ⅱ. 경제성 분석	• 순현재가치(NPV)	NPV≥0
	• 내부수익률(IRR)	IRR≥r
	• 수익성지수(PI)	PI>1
	• 회수기간(PP)	
	• 재무적분석(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 리스크분석(민감도 등)	
	• 유사프로젝트와 수익성 비교	
	• 정책집행 관료집단의 추진 의지 등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Ⅲ. 정책적 분석	• 지역경제의 현수준 파악	
	•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 환경성 평가	
	• 사업추진 현황 등 •기술의 우수성, 난이도 및 정밀도 등	
Ⅳ. 기술성 평가	•기술개발 수행여부 및 성공가능성	
	•기술의 시장성격 및 경쟁상황	
	•기술의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사업타당성 유무	
V. 종합판단	• 대안검토 및 제시	
	• 국내 정책적 고려사항	
	■ 계층분석(AHP) 방법 등 분석 제시	

투자사업심의위원회 부의양식

(사 업 명)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안건

제 안 자 제 안 년 월 일 년 월 일 1. 의결주문

【별표6】<개정 2022.08.12>

투자사업계획서 양식

2. 제안사유

사업명 : О О О О 사업

3. 주요내용

0000. 00. 00

4. 참고사항

[첨 부]

- 1. 투자사업 계획서(안)
- 2. 본 타당성 조사결과

3. 기타

O O 본부 O O 처(실, 센터)

1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필요성)

0

-

*

2. 사업목적 (목표)

0

-

*

3. 추진경위 (최초 방침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

0

0

0

0

2 사업 내용

1. 주요내용

□ 현황

0

-

*

□ 사업(추진)계획

С

_

*

□ 사업운영 계획

○ (인력운영계획)

-

ㅇ (운영비)

-

○ (매출액)

2.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0

-

*

□ 정성적 효과

0

-

*

- 3. 세부추진 일정
 - 가. 계약요청 일자
 - 나. 계약(예정일자)
 - 다. 계약기간
 - 라. 납품(준공)
 - 마. 계약(준공)이후 실적 관리 계획

3 │사업비 및 투자계획

- 1. 'ㅇㅇ년도 예산요구 내역
- 2. 총사업비 내역
- 3. 연차별 투자계획

4 사업타당성

1. 공사 중장기경영전략에 근거한 사업의 타당성

전략 부문	전략 부문 중 관련 부문 표시
전략과제와의 연관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와의 연관성 서술 (전사 전략 또는 사업부서 중기전략)
기 타	사업추진 필요성 등 서술

2. 법적·제도적·기술적 타당성 및 환경요인 분석

- ※ 시장 환경(경쟁분석 포함), 규제환경, 내부역량 등 환경 분석과 사업추진의 법적·제도적·기술적 타당성 또는 제약요인과 위험요인 및 그 해소대책 등 기술 (제약 없는 경우 '제약 없음' 표시)
- 예) 정관 등에 정해진 사업범위 고려
 - 사업운영 경험, 투자경험 등 내부역량 고려
 - 해외사업은 해당국가의 정치적·환율·법률적 Risk 고려
 - 출자사업은 출자대상기업의 건전성 및 수익성
 - 합작투자의 경우 합작대상 기업체의 건실성 등

- 3. 재무적 타당성
 - 가) 장기손익분석
 - ※ 수익 및 비용(원가)의 상세내역은 첨부자료로 제출 (수익 및 원가의 계산 내역 포함)
 - 나) 경제성 분석
 - ※ 비용편익분석(B/C 비율),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수익성지수(PI) 회수기간(PP) 등
 - 다) 민감도 분석
 - ※ 건설비, 운전자금, 판매가격, 노무비, 인건비 등 ±10% 변동에 따른 경제성 분석 지표의 민감도

5 리스크 분석

- 1. 사업분야
- 2. 재무분야
- 3. 보험 및 손해배상 등

추진 계획

- 1.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 2. 사업단계별 추진내용 등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위 원 명 : (인)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	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예	아니오
	보유하고 있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오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예	아니오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예	아니오
	등을 진행 중이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예	아니오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예	아니오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윤리 서약서

위 원 명 : (인)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1.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 · 공사 · 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 ·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 · 향응 ·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 · 알선행위 금지
-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별표9】

사업현황 상세 진단표 (사 업 명)

- 1. 사업개요
 - 사업일반개요, 사업추진 경과
- 2. 사업실적
 - 투자비(승인 투자비 한도 대비 실적 투자비 누계) / 회수액 실적
 - 사업진행 실적
- 3. 재무현황
 - 3개년 요약 재무상태표 및 요약 손익계산서
- 4. 이해관계자 및 참여사 현황
 - 이해관계자 현황
 - 참여사 현황 및 참여사별 향후 계획
- 5. 계약 / 운영현황
 - 주요 계약현황
 - 각종 보증내역
- 6. 인력현황
 - 공사 파견인력 및 현지 채용인력 현황 및 향후 계획
- 7. 해체비용
 - 사업종료 시 수반되는 각종 비용(복구비용, 잔여의무투자비 등) 및 추정 손실액
- 8. 기타사항
- ※ 사업의 특성에 따라 투자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항목 조정가능

【별표10】

사업조정 세부항목

- 1. 계약서 및 법률검토
 - 프로젝트 본계약서/부속계약서상의 의무 및 책임
 - 실제 계약추진현황(공정률, 기성집행액, 분쟁금액 등)
 - 계약서상 가능한 사업조정방안 검토 - 지분매각, 양도, 철회, 계약종료 사유 및 방법 등
 - 소송가능성 여부 및 처리방안
 - 법인 청산 및 자산매각 절차와 이슈사항
 - 현지인 계약종료에 따른 노무관리
 - 기타 계약서 및 법률에 따른 의무 및 책임
- 2. 경제적 효과 및 리스크 분석
 - 조정방안 실행비용, 소요시간, 소요재원
 - 조정방안 추진시기, 투자비 회수가능액 추정
 - 조정방안별 실행의 용이성, 장단점, 리스크 분석
- 3. 회계 및 세무 검토
 - 손상 및 손실여부
 - 조정방엔 따른 회계·세무 이슈 및 대응방안
- ※ 사업의 특성 및 진행정도에 따라 투자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항목 조정가능

【별표11】

사업종료보고서 (사 업 명)

- 1. 사업개요
 - 사업현황, 사업구조, 계약현황, 재무현황 등
- 2. 추진경위
 - 참여배경, 사업선정절차, 사업추진과정, 타당성 평가결과 등
- 3. 추진실적
 - 사업탐색 기간 내 주요사항
 - 사업진행 기간 내 주요사항
 - 투자 및 회수 실적
- 4. 주요보고 및 회의내용
 - (내부) 관리/사업부서와의 주요 협의사항, 투자심의 및 보고사항 등
 - (외부) 진출국 정부/지자체와의 회의, 운영권 및 파트너사 등과의 회의 주요 내용
- 5. 사업종료
 - 사업종료(정리) 사유, 추진방안, 추진경과 등
 - 사업종료(정리) 이후 잔여 법적 의무 또는 각종 잔여 의무 해소 여부 등
- 6. 환류
 - 사업추진의 Best Practice 등 성공사례
 - 사업추진 중 발생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등
- ※ 사업의 성격상 불필요하거나 작성이 불가능한 항목 조정 및 생략 가능

【별표12】

투·출자사업 실적 관리 카드							
사업부서	000본부 000처	사업담당	부장	000 (5 000 (5 000 (5			
안건번호	심의일자		추진현황	완료/정	<i>상/자연</i>		
사업명			총시업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사업기간 : ○심의결과 : 원안의결, 수정의 * 수정의결, 보류는 해당내용	, ,					
	○ 내부방침 수립: '00.00.00. - 00000 사업(안), 000처-000 ○ 사업예비선정위원회: '00.00.00.						
	- 심의결과 :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류 ○ 사업예비선정위원회 : '00.00.00 심의결과 :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류 ○ 이사회 의결 : '00.00.00. (00차 이사회, 제00호)						
주요경과 및 성과 (예시)	- 심의결과 : 원안의결, 수정 ○계약요청(0000처 →0000처) - 0000 요청, 00처-000 ○입찰공고 : '00.00.00 00000 공고 알림, 00처-000	: '00.00.00.					
	○계약체결(0000처 → 0000처): '00.00.00. - 00000 계약 체결 알림, 00처-0000 (선급금 00%, 000백만원 지급) :						
	※ 사업단계별 집행실적 및 성	성과를 구처	적으로 적	학성			
부진사유	- 엽의결과: 000 ※ 사업추진실적 부진 시 대내외 협의 내역 기재						
개선대책	○지연일정 개선을 위해 000	시행					